##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14

발의연월일: 2025. 2. 20.

발 의 자:문진석・이건태・김교흥

이정문 • 한정애 • 복기왕

이연희 • 윤준병 • 윤호중

조인철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제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지불하는데도 발주기관인 국가나 공기업 등과 계약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고정하는 고정불변금액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 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계약금 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공정한 처우를 개선하려 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 법률 제 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제3항 중 "이 법"을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등 이 법"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주요 원자재(원자재의비용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 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계약의 원칙) ① · ② (생	제5조(계약의 원칙) ① · 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3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u>이 법</u> 및 관계 법령에 규정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등 이
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	법
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	
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	
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생 략)	금액 조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
	약담당공무원은 주요 원자재
	(원자재의 비용이 해당 계약금
	<u>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u>
	하는 것을 말한다)의 가격이 1
	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
	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u> <u>다.</u>